特殊魚種管理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李 明 奎*, 金 榮 球**

A Study on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Management of Particular Species

Lee, Myeong-Gyu · Kim, Young Koo

KOREA MARITIME UNIVERSITY 1945

Abstract

The marine living resouces have the migratory pattern and reproduction and are distributed and live in the water, indifferently ocean boundary that man created artificially and uniformly because of ecological quality.

Due to the reasons, these kinds of stock migrates the high seas beyon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y have an intricate phase migrating from the high seas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ming and goni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 state or more than.

Among the marine living resources, there are kinds of stock prescribed differently from the conservation system of common marine living resources, what is called we call them "Particular species".

These kinds of stock contain highly magratory species, straddling stock, anadromous stocks, catadromous species, sedentary species and marine mammals.

By the above reasons, because these particular species exist limitation that a

*석사과정 해사법학과 공법전공
**해사법학과교수

need cooperation. At last the 1982 law of sea convention prescribed a management norm concerned particular species.

A new investigation and an effective legal counterproposal related to particular species management system.

Nevertheless, in the world area, reckless fishing by overfishing appeared and have doubt about effectiveness as international fishery norm of the 1982 law of sea convention.

It is the time that new investigation and an effective legal counterproposal related to particular species management system are called for.

This paper wants to analyse and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about such a particular species, and to reform a counterproposal.

제1장 序論

1982년 유엔 海洋法協約은 海洋生物資源의 利用과 保存에 관한 基本的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海洋生物資源중 魚種의 生物·生態學的 特性에 특히 基礎하여 通常의 魚種과는 그 保存과 利用의 法的 體系를 달리하는 魚種들이 있는데, 이들 魚種은 이른바 "特殊魚種"(Particular species)으로 불리는 高度回遊性魚種(Highly Migratory Species), 境界往來性魚種(Staddling Stocks), 海洋哺乳動物(Marine mammals), 溯河性魚種(Anadromous Stocks), 降河性魚種(Catadromous species), 定着性魚種(Sedentary Species)들이다.

유엔 海洋法協約이 國際漁業秩序의 憲章的 性格을 지니는 것에 많은 학자들은 同意하고 있다. 그럼에도 全世界的으로 海洋生物資源의 濫獲現狀을 비롯하여 많은 國際漁業紛爭이 惹起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協約의 實效性에 대하여 疑問이 提起되고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러므로, 유엔 海洋法協約이 特殊魚種의 管理에 관한 實質的인 履行을 保障하기 위한 現行의 法制度的 諸現狀에 대한 問題點을 檢討·分析하는 노력이 切實한 時點에 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論文은 유엔 海洋法協約上 特殊魚種管理에 관한 法的 構造의 體系속에서 現實의 國際漁業現況을 眺望하여 그 構造的인 問題點을 檢討하고 改善 方案을 마련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 것이다.

dCollection

第2章 特殊魚種管理의 國際法的 要因과 法的 構造

高度回遊性魚種과 關聯된 國際法的 要因은 高度의 遠洋回遊性과 商業的 價値가 높은 것 외에도 漁獲法과 관련한 混獲을 들수 있다.

高度回遊性魚種의 法的 構造는, 沿岸國과 所屬國民이 第1附屬書에 記載된 高度回遊性魚種을 漁獲하는 他國은 排他的經濟水域 및 그 外側水域에 걸쳐 當該 魚種의 보존을 保障하고 最適利用目標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直接 또는 적절한 國際組織을 통하여 協力하여야 한다. 적절한 國際組織이 없는 地域에서는 沿岸國 및 所屬國民이 當該 지역에서 當該 魚種을 漁獲하는 他國은 그 組織을 設立하고 그 사업에 參與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規定은 排他的經濟水域의 다른 規定에 追加하여 적용한다.

境界往來性魚種의 경우에는 이 魚種이 200海里 排他的經濟水域의 大陸棚域에 주로 棲息하면서 이 境界線을 넘나들기 때문에 沿岸國과 公海漁業國間의 合理的인 保存을 위하여 國際的인 協力이 필요한 점에서 國際法的 要因을 찾을 수 있다.

境界往來性魚種의 法的 構造는, 同一魚種 또는 관련된 魚種의 魚族이 2개국 이상 沿岸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 棲息하는 경우, 關聯 沿岸國은 海洋法協約의 제5장(排他的經濟水域)의 다른 규정을 害함이 없이 직접 또는 적절한 小地域組織이나 地域組織을 통하여 그 魚族의 保存 및 開發을 調整하고 保障하는데 필요한 措置에 合意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同一魚族 또는 이와 관련한 魚種의 魚族이 排他的經濟水域에서 그리고 당해 水域밖에 隣接한 水域內에 동시에 棲息하는 경우 적절한 小地域組織이나 地域組織을 통하여 隣接水域內에서 이들 魚族의 保存에 필요한 措置에 合意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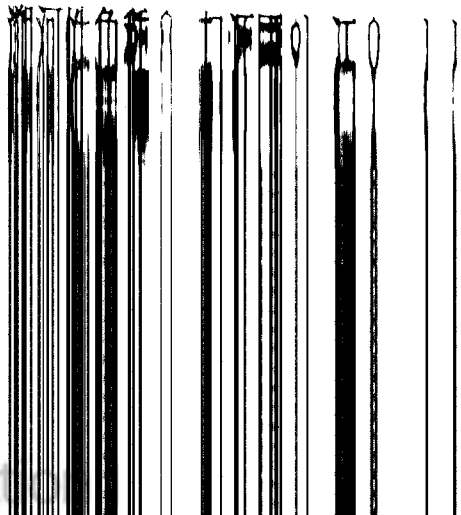

第2章 特殊魚種管理의 國際法的 要因과 法的 構造

高度回遊性魚種과 關聯된 國際法的 要因은 高度의 遠洋回遊性과 商業的 價値가 높은 것 외에도 漁獲法과 관련한 混獲을 들수 있다.

高度回遊性魚種의 法的 構造는, 沿岸國과 所屬國民이 第1附屬書에 記載된 高度回遊性魚種을 漁獲하는 他國은 排他的經濟水域 및 그 外側水域에 걸쳐 當該 魚種의 보존을 保障하고 最適利用目標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直接 또는 적절한 國際組織을 통하여 協力하여야 한다. 적절한 國際組織이 없는 地域에서는 沿岸國 및 所屬國民이 當該 지역에서 當該 魚種을 漁獲하는 他國은 그 組織을 設立하고 그 사업에 參與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規定은 排他的經濟水域의 다른 規定에 追加하여 적용한다.

境界往來性魚種의 경우에는 이 魚種이 200海里 排他的經濟水域의 大陸棚域에 주로 棲息하면서 이 境界線을 넘나들기 때문에 沿岸國과 公海漁業國間의 合理的인 保存을 위하여 國際的인 協力이 필요한 점에서 國際法的 要因을 찾을 수 있다.

境界往來性魚種의 法的 構造는, 同一魚種 또는 관련된 魚種의 魚族이 2개국 이상 沿岸國의 排他的經濟水域에 棲息하는 경우, 關聯 沿岸國은 海洋法協約의 제5장(排他的經濟水域)의 다른 규정을 害함이 없이 직접 또는 적절한 小地域組織이나 地域組織을 통하여 그 魚族의 保存 및 開發을 調整하고 保障하는데 필요한 措置에 合意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同一魚族 또는 이와 관련한 魚種의 魚族이 排他的經濟水域에서 그리고 당해 水域밖에 隣接한 水域內에 동시에 棲息하는 경우 적절한 小地域組織이나 地域組織을 통하여 隣接水域內에서 이들 魚族의 保存에 필요한 措置에 合意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溯河性魚種은 起源國의 江을 떠나 그 生涯의 대부분을 公海水域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魚種과 관련한 公海漁業國의 中途遮斷이라든가 附隨漁獲이 國際法的 要因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溯河性魚種의 法的 構造는, 溯河性魚種의 起源國이 이들 魚族에 대한 一次的인 利益 및 責任을 갖고 있다. 起源國은 當該 魚族의 기타 漁獲國과 協議한 후에 自國 河川에서 起源하는 魚族에 대한 總許容漁獲量을 결정할 수 있다. 起源國 以外의 國家에 經濟的인 混亂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溯河性魚種의 漁獲은 排他的經濟水域 外側限界內의 水域에서만 행해진다. 排他的經濟水域 밖의 漁獲에 관하여 關係國은 保存要件 및 당해 魚族에 관한 起源國의 필요를 適正하게 고려하여 이들 漁撈條件에 관한 合意에 도달하기 위한 協

dCollection

議를 계속하여야 한다. 溯河性魚種이 起源國 以外의 國家의 排他的經濟水域 外側限界內의 水域을 통하여 回遊하는 경우 그 國家는 當該 魚族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起源國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溯河性魚種의 起源國과 당해 魚種에 대한 다른 漁獲國은 제66조의 規定을 履行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地域組織을 통하여 約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海洋哺乳動物은 滅種의 危機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가지 理由 즉, 經濟的, 道德的, 審美的인 側面에서 반드시 人間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人類共同의 認識에 기초하여 國際的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 國際法的 要因을 갖고 있다.

海洋哺乳動物의 法的 構造는, 第5章의 어떠한 규정도 제5장에 규정된 것보다 더 嚴格하게 海洋哺乳動物의 捕獲을 禁止, 制限 또는 규제할 沿岸國의 權利 또는 적절한 경우 國際組織의 權限을 制限하지 아니한다. 各國은 海洋哺乳動物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 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國際組織을 통한 特別事業을 하여야 한다.

降河性魚種은 溯河性魚種과는 그 生態特性이 다르며 이 魚種의 경우 그 生活環의 대부분을 보낸 國家의 利益에 상당한 比重을 두고 있다. 다만 國際法的 要因으로 作用可能한 要素는 이 魚種이 타국의 排他的經濟水域을 통과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들 나라와 보존관리를 위하여 협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降河性魚種의 法的 構造는 降河性魚種이 그 生活環의 대부분을 보내는 水域의 沿岸國은 當該 魚種의 관리에 대한 責任을 지며 回遊漁의 出入을 보장하여야 한다. 降河性魚種의 漁獲은 排他的經濟水域 外側限界內의 수역에서만 행해진다. 排他的經濟水域에서 漁獲되는 경우 제67조의 규정 및 排他的經濟水域內 어획에 관한 이 協約의 기타 規定에 따라야 한다. 降河性魚種이 稚魚로서 또는 成魚로서 다른 국가의 排他的經濟水域을 回遊하는 경우 漁獲을 포함한 당해 어종의 관리는 제1항의 국가와 다른 關係國間의 協定에 의하여 規制되어야 한다. 그 協定은 당해 어종의 合理的 管理를 保障하여야 한다.

定着性魚種은 沿岸國의 排他的 權利 행사의 대상이 되어 大陸棚制度의 適用을 받는 魚種으로서 이 魚種과 관련한 國際法的 要因은 그다지 크지 못하다. 다만 게와 가재 등 一部 魚種이 大陸棚 資源인가에 관하여 法的 論爭이 있다.

定着性魚種의 法的 構造는 第5章(排他的經濟水域)의 規定은 定着性魚種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dCollection

第3章 特殊魚種管理의 現況

高度回遊性魚種의 경우 그 商業的인 價値로 보아 가장 中心的인 漁獲對象魚 참치라 할 수 있고 이를 對象으로 하는 國際漁業管理機構가 海域別로 散在해 있다. 太平洋의 경우에는,

우선 南太平洋水産委員會가 있다. 남태평양수산위원회의 主機能은 高度回遊性魚種을 포함한 海洋生物資源에 관한 情報의 分析 및 統計, 弘報, 漁業政策에 관한 交涉과 助言, 漁業許可證의 發給과 監視團束에 관한 事項 등이다. 南太平洋水産委員會는 實效的인 國際漁業管理機構의 하나로서 外國漁船의 登錄制度를 마련하여 漁業規制의 能率을 제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全美 熱帶 참치委員會를 들 수 있다. 이 委員會의 目的은 東太平洋에서의 참치류의 保存에 있고 管轄海域內의 참치자원이 最大持續的인 生産量을 확보할 수 있도록 科學的 調査 및 勸告를 행한다. 이 委員會는 특히 돌고래의 混獲에 의한 死亡率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돌고래의 死亡率을 最小化하는데 상당한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大西洋海域의 경우에는,

大西洋 참치 保存委員會가 있는데, 이 委員會의 目的은 大西洋 참치資源을 最大持續的 生産이 가능한 水準으로 維持·保存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科學的 勸告를 행하고 資源을 適正水準으로 유지하기 위한 規制措置를 施行하고 있다. 이 委員會는 國家間 檢索制度와 揚陸港 檢索計劃을 마련하고 있다.

印度洋의 경우에는,

印度洋·太平洋 참치 開發·管理프로그램과 西部印度洋 참치 機構協定이 있다. 管理프로그램의 直接的인 目的은 關係漁業國의 合意에 의한 國際的인 漁業管理機構를 설립하려는 前提에 따라서 漁業과 資源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漁獲量, 漁獲努力量 및 生物統計資料의 蒐集이라든가 解釋 및 獲得된 어업관리에 관한 정보를 關係國 및 關係機關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沿岸漁業과 遠洋漁業과의 競合이 점차로 顯著해 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發展的으로 解消하고 새로운 國際機構의 설립을 위한 노력이 요청되었다. 한편 西部印度洋참치 機構協定은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西部印度洋에서의 大型旋網漁業의 漁獲努力量의 增加에 따라서 自國의 資源保護 및 漁業開發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機構의 目的은 會員國間 협력을 추진하여 각종 施策을 調整함으로써 참치자원에 관한 利益을 서로간에 最大化하려는 것이다.

dCollection

境界往來性魚種의 경우를 海域別로 考察하면,

南東太平洋의 경우 그 沿岸國들은 페루, 칠레, 콜롬비아, 아쿠아돌 등이며, 이 중 칠레는 이 地域의 가장 중요한 漁業國으로서 칠레 고등어가 主漁獲對象魚이다. 이 魚種은 그 成魚期를 排他的經濟水域을 넘어 公海水域에서 보내기 때문에 公海漁業國에 의한 漁獲의 대상이 되는데 公海漁業國중 특히 러시아에 의한 漁獲이 많다. 이에 沿岸國인 칠레는 러시아에 의한 칠레의 排他的經濟水域의 隣接公海水域에서의 過度漁獲이 칠레의 漁業産業에 逆效果를 미친다고 主張하고 1991년 5월에 "presential sea"의 槪念을 導入하여 公海上의 通常魚種 및 關聯魚種을 보존하기 위한 基準을 마련하고, 이 基準을 違反하여 漁獲한 국가의 漁獲物에 대한 統制와 處罰基準을 마련하는 등 境界往來性魚種의 보존을 통한 沿岸國의 利益을 보호하려는 立場을 강하게 堅持하였다.

南西大西洋의 경우, 이 海域은 파타고니안 大陸棚이 沿岸에서부터 100-500海里까지 펼쳐져 있는데 이 海域에서의 重要魚種은 대구와 오징어이다. 1985년에 이 海域에서의 漁獲이 急減하면서부터 아르헨티나는 外國籍漁船에 의한 排他的經濟水域의 侵害操業行爲와 公海水域에서의 過度漁獲에 의한 惡影響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포클랜드 섬 保存管理水域을 設定하고 免許의 發給에 의한 操業漁船의 統制와 監視體制를 强化하였다.

베링海의 도너츠홀은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200海里 이상 떨어진 公海水域이며 1977년 미국의 資源自國化政策에 의하여 美國水域에서 撤收한 한국을 비롯한 遠洋操業船들은 베링公海水域으로의 漁場의 移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예상밖으로 명태의 好漁場을 형성하면서 폴란드,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등의 漁船에 의한 集中操業으로 1985-86년경의 明太漁獲量은 6-7백만톤에서 1991년에 1-2백만톤으로 減少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에 의한 自國水域內의 어업에 미치는 惡影響을 들어 關聯國들의 暫定的인 操業中止를 이끌어 냈고 1997년 현재 명태어업이 全面中斷된 狀態에서 資源調査만을 하고 있다.

北西大西洋의 그랜드뱅크는 그 外緣에 존재하는 대구자원을 둘러싸고 캐나다와 스페인과 폴란드를 위시한 유럽 共同體國家間에 漁業紛爭이 發生하였다. 이 海域의 資源管理는 北西大西洋漁業機構에 의하여 管理되며 그 中心國은 캐나다이다. 이 紛爭에서 캐나다의 主張은 스페인과 폴란드 漁船들이 許容漁獲量을 過大하게 超過한 持續인 漁業行爲가 自國의 대구자원에 결정적인 惡影響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北大西洋漁業機構는 總許容漁獲量을 設定하고 이를 國別로 配分하는 資源

管理方式을 채용하고 있으나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비협조와 地域水産機構의 資源管理政策의 效率的인 執行能力의 不在와 便宜置籍國漁船들을 포함한 非會員國 漁船들에 의한 非規制操業行爲가 複合되어 全體的인 濫獲과 資源의 崩壞를 초래한 것으로 評價된다.

溯河性魚種은 北西太平洋의 경우에 1980년대 이후 러시아는 日本의 公海연어操業에 대한 入漁料를 徵收하고 쿼터를 配分함으로써 認定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에 이르러 太平洋에서의 연어 操業現況은 海洋法協約 제66조에서 예기하는 바대로 起源國인 러시아는 1992년까지 日本의 공해연어조업을 中斷할것을 促求하였다. 1990년 봄에 러시아와 일본은 特別한 同意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海上의 연어조업을 禁止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연어 보존에 관한 協定草案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가 합류하여 4개 國家는 1991년에 國家管轄以遠에서의 연어조업을 禁止하고 附隨漁獲을 最小化하는 協定에 同意하였다.

海洋哺乳動物의 경우에 國際捕鯨委員會는 고래 資源의 保存과 利用에 관한 規制를 目的으로 고래와 관련한 科學的인 情報의 蒐集과 分析을 통한 他 國際機構와 協力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6년 以後 商業的 捕鯨에 대한 全面禁止를 시행하였고 一部의 土着民 및 生計維持次元의 捕鯨이라든가 科學調査의 목적에 의한 극히 制限的인 捕鯨만이 행해지고 있다. 南極물개의 保存에 관한 協約은 南緯 60度 以南의 海域에 대한 6개 종류의 물개의 保存과 관련한 것으로서 현재 남극물개에 대한 商業的 捕獲은 中斷되어 있으며 그 特徵은 豫防的 措置의 性格을 띠고 있다.

第4章 特殊魚種管理의 問題點의 檢討

特殊魚種管理上의 많은 問題點 가운데 두 가지 側面에 대하여 檢討를 행하였다. 우선 保存管理體系上의 問題를 檢討하면, 유엔 海洋法協約에서의 海洋生物資源에 대한 保存管理體系는 基本的 原理로서 海域別 接近에 基礎하고 있는데 이는 根本的인 限界點을 드러내고 있다. 즉 海洋生物資源은 人間이 創造한 이러한 人爲的이고 劃一的인 海洋境界線과는 無關하게 그들의 生物生態學적 回遊패턴과 分布特性에 기초하여 棲息하기 때문에 그 保存管理體系上 排他的經濟水域의 內外에서의 法的 構造의 相異로 인한 資源管理의 效率性 確保에 어려움을 발생케 하였다.

1995년도 公海漁業履行協定은 이러한 問題點에 대하여 豫防的 接近과 資源管理

dCollection

의 兩立性 槪念을 導入하고 있다. 履行協定은 제6조에서 國家들이 豫防的 接近의 履行을 위한 具體的인 段階에 대하여 規定하고, 제7조에서는 沿岸國의 國內管轄權에 服從하는 海域內의 海洋生物資源에 관한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를 害함이 없이 沿岸國과 公海漁業國은 公海隣接海域에서의 境界往來性魚種의 保存을 위한 필요한 措置에 대하여 國家管轄權에 服從하는 海域의 안팎에서 全地域을 통하여 高度回遊性魚種의 保存을 確保하고 適正利用의 目的을 增進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問題點은 非參加國과 關聯되어 있다. 유엔 海洋法協約은 境界往來性魚種 및 高度回遊性魚種의 管理에 관하여 沿岸國 및 關聯 遠洋漁業國의 資源管理에 관한 協力을 특히 强調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협정들은 非會員國 問題에 대하여는 沈默하고 있고 그 大部分은 獨立的, 拘束的 執行機關의 不在, 非會員國의 漁業行爲에 따른 問題點을 노정하고 있다. 非參加國의 發生原因은 恣意的으로 法制度權을 벗어나는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는 旣存會員國들의 意圖的인 排除가 있을 수 있다.

1995년 履行協定은 이러한 非參加國 問題에 대하여 規制를 대단히 强化하고 있다. 즉 제17조는 原則的으로 小地域的, 地域的 漁業管理機構 및 協定의 非會員國은 그러한 機構 및 約定의 保存과 管理措置를 따르고 旗國은 그러한 規制水域에서 自國旗를 揭揚하는 漁船의 漁業을 禁止시켜야 할 義務가 있다. 또한 제8조 4항은 保存과 管理措置에 따르는 國家만이 漁獲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乘船檢索制度와 揚陸港 檢索制度등 强力하고 實際的인 履行을 위한 具體的 指針을 마련하고 있다.

第5章 結論

1982년 유엔 海洋法協約의 法的 構造는 그 適用과 解釋의 多樣性에서 많은 法的 欠缺을 갖고 있다. 특히 高度回遊性魚種과 境界往來性魚種을 둘러싼 國際的인 漁業葛藤과 關聯한 保存管理體系上 水域別 接近이 갖는 構造的인 限界라든가 便宜置籍船과 非參加國 問題에 效率的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根本的인 問題點에 대하여 1995년 履行協定은 1982년 유엔 海洋法協約의 규정을 보완하여 實質的인 履行을 保障하기 위하여 유엔 海洋法協約의 基本構造를 維持하면서 高度回遊性魚種과 境界往來性魚種에 관한 새로운 漁業規範을 創出해 냈다.

dCollection

그 내용은 위에서 指摘한 거의 대부분의 問題點들을 包括的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다 具體的, 實質的인 規定들로 구성되고 있다. 즉 保存管理體系의 豫防的 接近을 적용하는 것이라든가 排他的經濟水域 內外의 資源管理에 대한 一貫性을 실현하는 것이라든가 旗國責任을 엄격하게 하고 각종의 統制裝置를 强化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公海漁業履行協定도 그 法理上, 現實의 漁業慣行上 豫見되는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保存管理體系가 一貫性을 갖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具體的인 實現可能性은 疑問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排他的經濟水域 내의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는 유엔 海洋法協約이 존재하는 한 確固不動하게 지켜질 것이고 반면에 公海漁業自由의 원칙은 많은 경우 部分的으로 侵害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海洋生物資源의 枯渴現狀이 深化될 경우 沿岸國의 管轄權의 주장은 더욱 確固하게 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一貫性있는 자원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非參加國의 收用을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公正한 開放과 無差別原則을 1995년 履行協定은 保障하고 있으나 그래도 非參加國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旣存 參加국들의 意圖的인 妨害에 의하여 新參加國의 參與가 排除될 가능성을 排除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履行協定의 規定상 廣範圍한 恣意的인 判斷의 소지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셋째로, 豫防的 接近은 필요하지만 愼重하게 접근하지 않을시 오히려 公海漁業을 極度로 萎縮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海洋生物資源의 資源管理上의 構造的 어려움이 常存하는 현실에서는 豫防的 接近의 濫用의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東 洋 文 獻

金榮球,「現代海洋法論」, 아세아社, 1988.

朴椿浩·柳炳華,「海洋法」, 民音社, 1986.

外務部 國際經濟局, 第3次 유엔 公海魚族會議 結果報告書, 1994.

李丙朝·李仲範, 「國際法新講」, 一潮閣, 1995.

dCollection

國際食糧農業協會, 「海面漁業と國連海洋法」, 1994.

山本 忠·眞道 重明, 「世界の漁業管理(上卷)」, 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_____, 「世界の漁業管理(下卷)」, 海外漁業協力財團, 1994.

小田 滋, 「海洋法の原流を探究る」, 有信堂高文社, 1989.

波多野里望·小川芳彦, 「國際法講義」, 有斐閣, 1994.

布施 勉, 「國際海洋法序說」, 酒井書店, 1992.

2. 西 洋 文 獻

Burke, William T. : *The New International Law of Fisheries : UNCLOS 1982 and Beyond,* Oxford: Clarendon Press, 1994.

Churchill, Robin Rolf & Lowe, Vaughan A. :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5.

Dahmani, Mohamed : *The Fisheries Regim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Hey, Ellen : *The Regime for the Exploitation Of 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Resources,*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Irownlie, Ian. :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 Oxford: Clarendon Press, 1979.

Jennings Robert Y. : *Entry into Force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Koers Albert W. : *International Regulation of Marine Fisheries,* London: Fishing News Ltd., 1973.

Kwiatkowska, Barbara :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New Law of The Sea,*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dCollection